

## 행정심판청구

청구인 이기남

피청구인 서울 관악구청장

재결청 서울특별시장

청구대상인 처분 피청구인이 1994. 12. 8. 자로 청구인에게 한 94년도 노령  
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

처분이 있음을 알 날 1994. 12. 8.

### 심판청구취지

피청구인이 1994. 12. 8. 자로 청구인에게 한 94년도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선정  
제외처분을 취소한다.

라는 재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1. 청구인은 1929. 9. 2.에 출생하여 처인 소외 방월희와 함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, 1991년부터는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생활하여 왔습니다.
2. 청구인은 1994. 12 . 5. 피청구인에게 노령수당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해 12. 8 .자로 청구인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'94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사업지침(이하 '위 지침'이라고 함)의 규정에 의거 만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7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건 제외처분을 하였습니다.(소갑제1호증 노령수당지급신청에 대한 통보)
3. 본건 처분의 위법성
  - 가.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"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"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.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"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 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  - 나. 따라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위임된 범위는 "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대상자 선정 기준"에 관한 것일 뿐임은 문면상 명백합니다. 그럼에도 보건사회부장관

이 위와같은 기준을 정하면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서 명시하고 있는 "65세 이상"이라는 요건을 월씬 더 강화하여 "70세 이상"으로 이를 정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며 이부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입니다.

다. 더구나 청구인은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. 결국 피청구인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위 지침을 근거로 청구인을 노령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앞서 본 바와같이 법령에 위배하여 무효인 위 지침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.

#### 4. 결 론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본건 처분은 의당 취소되어져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9조,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본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#### 입 증 방 법

1. 소갑제1호증

노령수당 지급신청에 대한 통보

1994. 12. 23.

청구인 이 기 남

서울특별시장 귀중.